

제416회 임시회
'24. 4. 23.(화)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

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안치영 의원 등 7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- 발의일자 : 2024년 4월 11일
- 회부일자 : 2024년 4월 11일

3. 제안사유

-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위촉직 위원의 자격 요건 등을 상위 법령에 근거하여 정비함으로써 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도내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인원 확대(안 제3조제1항)
 - (현행) 10명 이내 → (개정) 15명 이내
- 위촉직 위원의 자격 요건 정비(안 제3조제3항)
 - 아동복지학,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1명 이상 포함 신설 등
-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조문 정비
(안 제1조, 안 제2조)

5. 검토의견

가. 제출배경

- 「아동복지법」 제12조는 도지사 소속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둘 것을 규정하고, 심의위원회의 조직·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- 이에 「아동복지법 시행령」 제13조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, 「충청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」는 법과 시행령에 따른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.
- 「아동복지법 시행령」이 일부개정(2020.9.29.시행) 됨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 수가 확대되고 위원회 구성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위촉직 위원의 자격 요건이 추가되는 등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이 개정되었음.
- 이에 원활한 충청북도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.

나. 주요내용 검토

- 안 제3조제1항은 「아동복지법 시행령」에 근거하여 충청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인원을 현행 ‘10명 이내’에서 ‘15명 이내’로 확대 규정함.
- 안 제3조제3항은 「아동복지법 시행령」에 근거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시 아동복지학·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을 각각 1명 이상 포함하도록 규정함.

다. 종합 검토의견

- 상위 법령에 근거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향후 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내실 있는 운영을 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조례 개정은 적절한 조치이며 특별한 이견이 없음.